



논산을 새롭게
시민을 행복하게

의안번호

제220호

**논산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논 산 시 장
제출연월일	2023. 11. 15.

논산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20호
----------	-------

제출연월일 : 2023. 11. 15.
제 출 자 : 논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주민생활지원과장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의료급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특별회계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또한 존속기한 만료일(2023년 12월 31일)이 도래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 「의료급여법」에 따른 제명 변경
- 현행 : 「논산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개정 : 「논산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나. 조례의 목적 및 존속기한 연장(안 제1조 ~ 제2조)
- 다. 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안 제3조)
- 라.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5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법규)
- 1) 「지방재정법」 제9조
 - 2) 「의료급여법」 제26조
 - 3)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
 - 4)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기획감사실-10901호(2023. 10. 12.)]
- 2)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복지정책과-29907호(2023. 10. 4.)]
- 3) 규제심사: 규제심사 대상 아님 [예산실-11496호(2023. 9. 27.)]
- 4) 입법예고 및 전자공청회
 - 가) 예고기간: 2023. 10. 4. ~ 2023. 10. 24.(20일간)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5)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 6)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 원안가결(2023. 8. 29.)
- 7) 충청남도 소관실과: 충청남도 복지보육정책과(041-635-2613)

□ 개정조례안

논산시 조례 제 호

논산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논산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논산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논산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시의 의료급여 담당 과장, 기금출납원은 시의 의료급여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회계공무원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고보조금
2. 충청남도 보조금
3.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상환받은 대지급금
4.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5. 특별회계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6조제2항에 해당하는 비용
2. 국고보조금 반환금
3. 충청남도 보조금 반환금
4. 특별회계 결산상 잉여금 반환금

제6조(납입의 고지) 법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른 수입금과 그 밖의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7조(예비비) 이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과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논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② 논산시농공단지관리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③ 논산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④ 논산시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⑤ 논산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⑥ 논산시 토지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중 “2023년 12월31일”을 “2028년 12월31일”로 한다.

소 관 부 서	성 명
입	주민생활지원과 김 배 자
안	의료자활팀장 나 형 아
자	담 당 자 성 민 경 (746-5312)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해당 없음

2. 비용추계결과**가. 추계의 전제**

○ 해당 없음

나. 추계결과

○ 해당 없음

3.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 배 자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의료급여법」

제2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급여비용, 대지급에 드는 비용, 제33조제2항에 따른 업무 위탁에 드는 비용 또는 그 밖의 의료급여 업무에 직접 드는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 또는 채신관서에의 예치
2. 국채·공채의 매입

④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기금관리공무원) 시·도지사는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의 지출행위와 징수결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 담당관과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급여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의 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기금을 교부한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교부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금을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시·도의 조례나 규칙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기금운용상 증감조정이 필요한 때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로부터 교부받은 기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이하 “기금계정”이라 한다)을 설정·운용하

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지급금의 상환, 부당이득금의 징수 등으로 교부받은 기금이 소요비용을 초과하여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전액을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계정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전액을 시·도지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는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의료급여비용심사위탁수수료, 수급권자전산관리위탁수수료, 급여비용지급위탁수수료 및 의료급여의 적정성평가 위탁수수료 등 소요비용을 의료급여기금계정에 계상하여야 한다.

⑦ 법 제26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비용
2. 법 제5조의2에 따른 사례관리사업 수행을 위한 비용
3. 수당·일용잡급·국내여비·교육비·수용비·수수료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물품구입비(이하 “행정경비”라 한다). 이 경우 행정경비는 당해연도 기금 지출액의 10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⑧ 시·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기금계정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⑨ 의료급여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법·영 및 이 규칙에서 정한 것외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